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183

발의연월일: 2025. 2. 14.

발 의 자:김영진·박희승·조승래

이재정 • 한병도 • 서삼석

채현일 · 강유정 · 허 영

임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2024년 7월, 헌법재판소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(2022헌가6, 2024.7.18.).

이에 유사한 위반행위인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상 '사업보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'에 대한 벌금이 2억원 이하인 점을 고 려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와 법률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(안 제3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2억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9조(벌칙) ① 「상법」 제401	제39조(벌칙) ①		
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			
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			
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			
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			
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			
작성 · 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			
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			
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			
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			
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			
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			
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			
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			
벌금에 처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</u>		
	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		
	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		
	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		
	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		
	당하는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		
	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2억원		
	<u>으로 한다.</u>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